

# 대법원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노태악)는, 2006년 성폭력처벌법위반(강간등치상)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에 저지른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,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,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**원심판결(징역 총 5년)을 확정**함(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도17481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공소사실의 요지

#### ▣ 범죄전력

- 피고인은 2000. 12. 26.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. 5. 8.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, 2006. 11. 24.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7. 2. 21.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

#### ▣ 제1죄: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

- 피고인은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(여, 당시 8세)를 폭행·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뒷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

■ 제2죄: 공무집행방해

- 2019년 및 2021년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밀치거나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

■ 제3죄: 상습폭행

-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남부교도소, 해남교도소에서 4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

## 2. 소송경과

- 제1심: 유죄[징역 2년(판시 제1죄) 및 징역 1년(판시 제2, 3죄), 공개명령(5년), 이수명령(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), 취업제한명령(10년), 전자장치 부착명령(10년),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치료명령 청구 기각] → 징역 총 3년
- 원심: 유죄[징역 4년(판시 제1죄), 공개명령(5년), 이수명령(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), 취업제한명령(10년), 전자장치 부착명령(10년), 판시 제2, 3죄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,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기각] → 징역 총 5년

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쟁점

-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요건으로서 '재범의 위험성'의 의미
-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
- 정당방위 인정 여부
-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

## 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과 검사의 **상고 모두 기각**(원심 수긍)

## 다. 판단 내용

- ▣ 검사 상고 부분(치료명령 청구 기각)

-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'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- ▣ 피고인 상고 부분

-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,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,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